

사업주와 근로자의  
튼튼한 파트너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

# Contents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6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13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관련 Q&A	14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18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Q&A	21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2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25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26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41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

# 고용유지지원금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함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등

- 매출액 15%감소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지원 요건 완화

## 인정예시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확진자의 방문 등

## 기간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지원 조건 및 수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

구분	지원 조건	지원 수준
휴업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2/3) *1일한도는 6.6만원(연 최대 180일까지)
휴직	1개월이상의 휴직	※'20.2.1.~7.31.의 기간에는 우대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3/4 (대규모기업은 2/3)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 매출액·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대비 15% 이상 감소
-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지원 조건 및 지원 수준

사업명	지원 조건	지원 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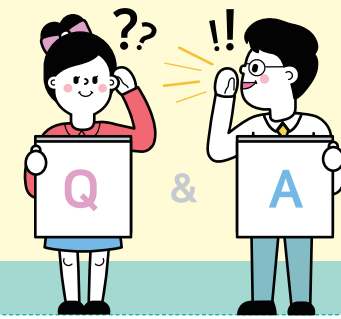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고 한다)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 지원(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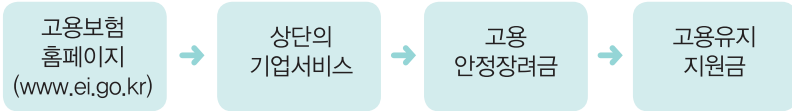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 Q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 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참조 P.41)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 Q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휴업·휴직수당의 1/2 또는 2/3

## Q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 평균근로시간

## Q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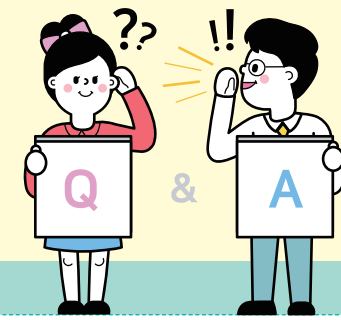
## Q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예시** 1.19.~2.18. 신청시 1.19.~1.31., 2.1.~2.18.로 신청해야함  
**휴직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 Q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 Q 7.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 Q 8. 총 근로시간에 연장·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 상당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

## Q 9.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 인사·노무 ③ 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Q 10.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1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 예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③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④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⑤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 Q 1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예시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위조·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
- 감원방지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었는데도 상실사유를 거짓 신고하거나 또는 지연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지원금을 신청
  - 휴직 참여자가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
-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임금 또는 수당을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거짓 신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지원
  - \* 재고량 50% 증가, 매출액·생산량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 **특별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 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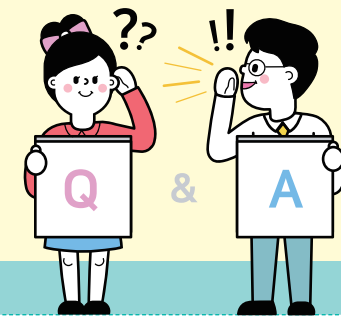
#### 지원 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관련 Q&A



❖ '20.3.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수준 상향\*

\* 지원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 → (변경) 3/4  
▲ 대규모기업: (현재) 1/2 → (변경) 2/3

## Q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 Q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 지원 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 → (변경) 3/4  
▲ 대규모기업: (현재) 1/2 → (변경) 2/3

### 〈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 수준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휴업·휴직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1개월 휴업·휴직시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 Q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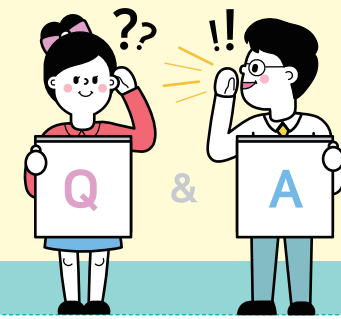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 관련 Q&A



## 사례 1

- 고용유지조치를 '19. 12. 1.~'20. 3. 31.까지 실시한 경우
  - '19. 12. 1.~'20. 1. 31.(2개월) : 2/3 지원
  - '20. 2. 1.~'20. 3. 31.(2개월) : 3/4 지원

## 사례 2

- 고용유지조치를 '20. 6. 1.~'20. 9. 30.까지 실시한 경우
  - '20. 6. 1.~'20. 7. 31.(2개월) : 3/4 지원
  - '20. 8. 1.~'20. 9. 30.(2개월) : 2/3 지원

### 〈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휴직수당 140만원인 근로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기간 / 지원 금액			
	'19.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b>사례 1</b>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기간 / 지원 금액			
	'20. 6월	'20. 7월	'20. 8월	'20. 9월
<b>사례 2</b>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105만원	105만원	93만원	93만원

## Q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 180일로 동일합니다.

## Q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근로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 지원 수준 상향 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 수준 상향 시 (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월급	휴업·휴직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지정 업종 범위**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원칙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개별법에서 정한 등록·신고·면허를 받은 업체는 추가로 인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코드를 말하며, N752, R901는 소분류, 나머지 코드는 세세분류에 따름

업종	분류 기준	
여행업	업종코드	• 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업종코드	• 55101(호텔업)                      • 55103(휴양콘도 운영업)
	개별법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운송업	업종코드	• 49232(전세버스 운송업) • 50111(외항 여객 운송업) • 50121(내항 여객 운송업) • 50201(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업종	분류 기준	
관광운송업	개별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시장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같은 법 제3조제1~6호)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공연업	업종코드	•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개별법	•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관련 Q&A

## 특별지원 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구분	지원 요건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우대

사업명	일반업종 지원 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시간의 20% 초과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지원</li> <li>*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li> <li>** '20.2.1.~'20.7.31.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3~3/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지원</li> <li>* 1일 7만원 한도 (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li> </ul>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지원</li> <li>* 1일 66,000원 한도(연 180일까지)</li> <li>** '20.2.1.~'20.7.31.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2/3~3/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지원</li> <li>* 1일 7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li> </ul>

## 경과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년 3월 16일부터 '20년 9월 15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적용\*

\*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4조,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2호, 2019.12.3.)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현행 법령 조회 가능

## Q 1.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지원 수준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10, 대규모기업은 2/3~3/4로 상향됩니다.

## Q 2. 언제부터 상향지원이 되는 건가요?

- '20.3.16.~'20.9.15.(6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예시 휴업기간이 3.2.~3.31.인 경우 3.2.~3.15.까지 기존 지원 수준인 3/4, 3.16.~3.31.은 상향된 9/10지원

## Q 3. 1일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도 변경되는 건가요?

- 1일 지원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으로 상향되며, 대규모기업은 6.6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지원기간은 연 180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 Q 4.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의 변경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단축되며,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을 1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 무급휴직 최소한 90일 이상 실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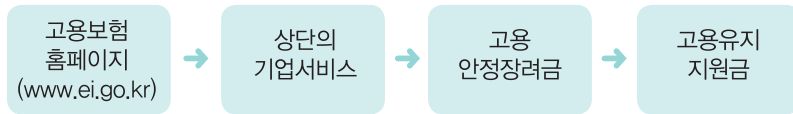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 1. 고용유지지원금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① 인터넷신청을 원하시나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 ② 방문신청을 원하시나요?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해 주세요.(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참조 P.41)

#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1.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 2. 근로자와 휴업·휴직에 대한 협의를 하셨나요?

근로자와 휴업·휴직기간 및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그 증명서류(별도 양식없음)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시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예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약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및 근로자 대표 동의서 등

### 3. 매출액, 생산량 등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매출액 장부,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4.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가 있으신가요?

근로시간 조정 등 휴업을 할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기존의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5.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수급관련 서류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셨나요?

휴업·휴직여부에 따라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2. 휴업의 경우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출·퇴근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3. 휴직의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휴직동의서 등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4. 휴업·휴직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월별 임금 대장 또는 휴업·휴직수당 지급 대장 등 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2. 고용유지지원금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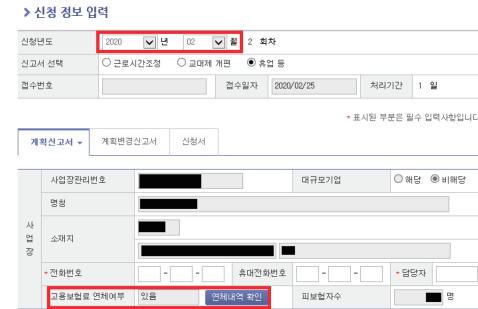
-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유급휴업)지원금 혹은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 1. 로그인 하기



- 기업회원을 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거나 공인인증서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1



- 계획신고서 탭을 선택하면 계획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 로그인 ID가 사업장관리번호 부분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년월을 선택합니다.
- 별표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값이니 꼭 입력해주시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으로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보험료 연체여부를 확인합니다.



###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2

2020년 02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취업백서** **별첨하기**

없음  피보험  주무직  주6일

연도	주민등록번호	성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휴업일수	휴업시간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일	시간	
1			일자																			
			시간																			
2			일자																		5일	
			시간																		40시간	

**피보험자 등록** **전산대체신고** **기동록자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고용유지조치 예정 일자에 해당 일의 휴업예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휴업일수/시간이 계산됩니다.
- 피보험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피보험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산대체신고 방법 안내 슬라이드 참고)
- 기동록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했던 기동록자 목록을 조회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4

• 파일용량은 10MB 이하로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zip, rar, hwp, hif, gif, jpg, jpeg, bit, pdf, htm, bmp, doc, docx, ppt, pptx, xls, xlsx, eml, chm, hif, jpeg, psd, 7z, mj, bsh, hwp, gz, wtl]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택** **찾아보기**

2. 매출액 장부, 영산·재고매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택** **찾아보기**

3. 노사합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기 합의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선택** **찾아보기**

기타 첨부파일 **선택** **찾아보기**

수위로 업로드

**저장** **화면초기화**

**전송** **수정** **삭제** **민원신청내역** **화면초기화**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된 신고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신고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3

\* 입력드립니다: 입력이 비정상적 일 항목은 화면 상단에 대상자 일괄식 자동삭산되어 표시됩니다.  
< 전월전월이 2019.4.30. 이후인 휴업사유로 계획신고서/계획변경 신고서 >

구분	① 1개월 평균	계획서를 신고한 달 직전 1월~1월	직전 4월	직전 6월
기준 기간	* 총근로시간 (소급+초과)			
총 근로 시간	- 소급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고용 유지	① (연·월) 고용유지조치 기간(소급근로일수)		② (연·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내용	③ (연·월)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④ (연·월)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⑤ (연·월) 단축된 근로시간 중 일용근로자 비율		⑥ (연·월) 단축된 근로시간 중 일용근로자 비율	
	* 고용유지조치 사유(선택)			
	* 고용유지조치 상세사유			

- ①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②란은 (월)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 ③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 ④란은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⑤란은 "③의 전체피보험자수 x 조업(근무)일수 x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 ⑥란은 ⑤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고용유지조치 사유를 선택한 후, 상세사유를 적습니다.

### 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 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 5

> 신청 정보 입력

신청년도  년  월  일자

신고서 선택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0/02/25 처리기간 1 일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검색**

계획신고서 **계획변경신고서**  신청서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고용보험 - 신고내역 조회

#### 사업계획서 승인 정보 조회

순번	계획신고접수번호	사행년도	사행월	사행일자	계획서종류
1		2020	02	1	계획

- 고용센터를 통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변경신고서 탭을 클릭합니다.
- 계획신고서 접수번호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된 계획신고서의 내역이 조회됩니다.
- 원하시는 년도/월의 계획신고접수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서를 기반으로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6.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 6

• 파일용량은 10MB 이하로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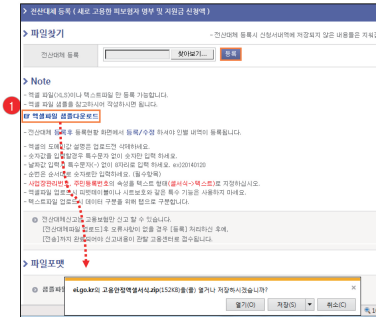
• 등록 가능 파일

[zip, rar, bmp, bit, gif, jpeg, png, txt, pdf, hwp, hwpz, doc, docx, ppt, pptx, xls, docx, eml, chm, hlt, prog, psd, 7z, rar, lzh, hwp, gz, etc]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with several input fields and buttons. On the left, there are three main sections for attachments, each with a '찾아보기' (Browse) button. Below these are fields for '수수료 없음' (No fee) and '기타 첨부파일' (Other attachments). On the right, there are buttons for '저장' (Save), '화면초기화' (Reset), '전송' (Submit), '수정' (Modify), '삭제' (Delete), '민원신청내역' (Application History), and '화면초기화' (Reset).

- 지원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 업로드 한도 용량이 작기 때문에 파일용량을 낮추어 업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저장 해주셔야 합니다.
- 이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데이터 수정 후 (수정)버튼을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정상 수정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이 완료 되어야 신청서 접수가 완료됩니다.(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 전산대체 신고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2



- 고용유지(유급휴직)
- 고용유지(인력재배치)
- 고용유지(훈련)
- 고용유지(휴업)
- 고용유지(유급휴직)\_유급휴직\_신고서.xls
- 고용유지(유급휴직)\_신고서.xls
- 고용유지(유급휴직)\_후업\_신고서.xls
- 고용유지(유급휴직)\_후업\_신고서.xls

### 전산대체신고 화면

1.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
  - 엑셀파일 샘플 다운로드를 클릭 하여 고용안정엑셀서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2. 고용안정엑셀서식
  - 다운로드 받은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원하는 지원금의 신고서/신청서를 찾아 작성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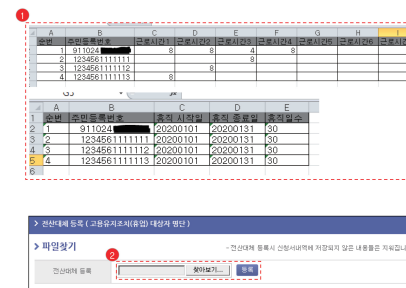
## \* 전산대체 신고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1



### 신고서/신청서 작성 화면

1. 전산대체 신고 버튼 클릭
  - 대상자 명단 우하단의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전산대체신고 팝업 창을 띄웁니다.
2. 신고서/신청서 저장하지 않고 버튼 클릭 시
  - 담당자 정보 등 화면상 빨간색 별표가 표시된 항목을 모두 입력되어야 신고서/신청서 저장이 가능
  - 저장 후, 전산대체신고 버튼을 눌러 엑셀 업로드가 가능해 집니다.

## \* 전산대체 신고 방법 안내(다수인원신고) - 3



### 엑셀파일 작성 및 업로드 화면

1. 고용안정엑셀서식 작성
  - 원하는 지원금의 신고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예시)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유급휴직) 신고서
- 작성 시 유의사항
  - 엑셀의 도메인값 설명은 업로드전 삭제하세요.
  - 숫자값을 입력할경우 특수문자 없이 숫자만 입력 하세요.
  - 날짜값 입력시 특수문자(-) 없이 8자리로 입력 하세요. ex)20140120
  - 순번은 순서대로 숫자로만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의 속성을 텍스트 형태(셀서식->텍스트)로 저장하십시오.
  - 엑셀파일 업로드시 피벗테이블이나 시트보호와 같은 특수 기능은 사용하지 마세요.
  - 텍스트파일 업로드시 데이터 구분을 위해 탭으로 구분합니다.
  - 엑셀파일에 작성된 대상자가 많을수록 업로드 속도가 느릴 수 있으며, 고용보험페이지에 부하가 발생하여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업로드 할실 엑셀파일은 대상자 2000명 이하로 나누어 작성하여 업로드 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2. 고용안정엑셀서식 업로드
  - 전산대체등록 팝업 창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작성된 엑셀서식을 불러온 후, 등록버튼을 눌러 업로드 합니다.





#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중부청	의정부지청	의정부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가농2동 754)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031-828-0832~4 0893, 0813, 0838
	경기지청	수원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51~8, 7845, 7897, 7965, 7996
	성남지청	성남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성남시·광주시·양평군·이천시·여주시·하남시	031-739-3170, 3122, 4991, 4916
	안양지청	안양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4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양시·과천시·광명시·의왕시·군포시	031-463-0761~4, 0767, 0768
	안산지청	안산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031-412-6967
	평택지청	평택 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2층 평택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646-1238
	강원지청	춘천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 (석사동), 빅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47
	강릉지청	강릉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033-610-1913
	강릉지청	속초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033-769-0943, 0946, 0960
	태백지청	태백 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강원도 태백시	033-550-8633
	태백지청	삼척 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강원도 삼척시	033-570-1906
	영월출장소	영월 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 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과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사하구	051-860-1923~7, 1931, 2072, 2100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051-760-7210~5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부산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 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051-330-9951~9955	
	창원지청	창원 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창원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 고용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052-228-1942	
	양산지청	김해 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055-330-6437	
	양산지청	양산 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진주지청	진주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1, 1814, 1818	
	대구청	대구청	대구 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대구광역시(중구·수성구·북구·동구)·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	053-667-603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7,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대구서부지청		칠곡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경상북도 칠곡군 성주군	054-970-1906~7	
포항지청		포항 고용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80-3000	
포항지청		경주 고용복지*센터	경주시 원화로 396 7층	경상북도 경주시	054-778-2500	
구미지청		구미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1	
영주지청		영주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054-639-1146	
영주지청		문경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054-559-8251	
안동지청		안동 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054-851-8062	



# 전국고용센터 문의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광주청	광주청	광주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정성군	062-609-8500
	광주청	광주광산 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2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062-960-3201
	전주지청	전주 고용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063-270-9210
	전주지청	남원 고용복지+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063-630-3917
	전주지청	정읍 고용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063-530-7501
	익산지청	익산 고용복지+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전라북도 익산시	063-840-6507
	익산지청	김제 고용복지+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전라북도 김제시	063-540-8406
	군산지청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전라북도 군산시	063-450-0636
	군산지청	부안 고용복지+센터	부안군 변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063-580-0515
	여수지청	순천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061-720-9161
	여수지청	여수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140
	여수지청	광양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전라남도 광양시	061-798-1902
	목포지청	목포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	061-280-0541~2, 0564
	목포지청	해남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대전청	대전청	대전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042-480-6012~13, 6015~21
	대전청	공주 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충청남도 공주시	041-851-8507
	대전청	논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대전청	세종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044-861-8992~3
	청주지청	청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전청	천안지청	천안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아산시·예산군	041-620-7441~6
	충주지청	충주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충주지청	제천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보령지청	보령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041-930-6259, 6243
	서산출장소	서산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제주	제주고용센터	제주 고용복지+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센터 2층	제주시·서귀포시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든든한 파트너

## 고용유지지원금

---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주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연락처	044-202-7219
인쇄처	동명기획 ☎ 044)868-7542

---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이 어려운 회사의 파트너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